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6. 24 선고 2018가단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정주혜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2. C조합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0. 5. 27.

판결 선고 2020.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7. 3. 20.

접수 제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7.4. 12. 접수

제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7. 3. 20. 위 선박에 관하여 2017. 1. 23.자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조합은 2017. 4. 12. 위 선박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가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고, 그에 기초한 피고 C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그 처 E의 간곡한 부탁으로 위 선박에 관하여 명의수탁을 하였다. 피고 B가 명의수탁하면서 2017. 4. 3. 을구 제1번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고, 같은 달 4. 12. 피고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피고 C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채무도 피고 B 명의로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C조합 명의의 각 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C조합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위 B가 위 채무들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등에 관하여 적용되고,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선박등기법 제5조에 따라 위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등에 관하여 준용되는바, 선박등기와 관련하여 그 등기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의 대부분이 선박에 대하여도 준용되는 이상, 위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선박에 관하여도 그대로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확인서면에 날인된

우무인이 원고의 우무인이 아니라 법무사 F의 지문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검찰청에서의 필적감정결과 위 확인서면의 필적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A" 부분은 원고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감정결과가 나온 점, ②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7. 3. 20.경 당시 원고와 그 처인 G가 한국중부발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7,600만 원 상당이었고, 원고 역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위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원고와 처인 E가 어업에 종사하며 H조합에 부담하였던 선금금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④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는 선박명의를 변경된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를 받아 출항신고를 여러 차례 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문맹이 아니므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당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 B는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마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보았다는 흔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 C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에 직면하게 된 점, ⑥ 원고는 그 처인 E, I, 피고 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검찰청홍성지청 검사는 2019. 10. 25.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B 명의의 등기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조된 서류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 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채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기초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 B 명의의 위 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조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별지]

목 록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 J
 2. 선적항 : 충청남도 보령시
 3. 선질 : 에프.알.피
 4. 총톤수 : 45톤
 5. 기관의 종류와 수 : 디젤기관 441케이더블유 600피에스 1대
 6.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추진기 1대
 7. 진수연월일 : 2013년 4월 29일
- [고유번호 : K]. 끝.